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31
----------	------

2021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찬성자 12명)
- 나. 발의일자 : 2021년 2월 3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 라. 상정결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12.10. 시행)되어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4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기 타 : 해당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 가. 개정안 개요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예술인 가운데서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에 창작활동 지원 및 권리의 보장과 장  
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개정의 필요성

- 「헌법」, 「장애인복지법」,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누릴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의 장애예술인이 열악한 창작여건 하에서 예술작품 창작·발표 기회의 부족 등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당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에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특정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월 제정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책추진의 추동력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어 장애인과 관련된 문화예술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상위법 제정과 더불어 문화활동 및 문화향유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동 전부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9개조로 구성된 내용 가운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고용촉진, 관련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12개조로 재구성하였음.

### (1) 조례안의 구조

- 동 전부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2조	정의	제8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3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10조	업무의 위탁 등
제5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12조	시행규칙

###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20.12.10.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집행과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기본계획은 특정 정책영역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행정수단의 활용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정책활동을 일관적이고 전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나 2017년 조례 제정이후 장애예술인과 관련된 계획은 부재했었음.

이에 집행부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정책이 발전하고 그들의 든든한 창작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점검하여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임.

#### (4)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7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최근 3년,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에 대한 요구자료를 한 바, 2020년 미디어재단티브이에스에서 청각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콘텐츠를 제작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캠페인 방송 외에는 없으며,
- 최근 3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중 ‘장애예술인 고용창출 현황’을 확인한 바, 총 9명이 취업을 하였으나 2018년 세종문화회관의 ‘무대음향’을 제외하고는 행정, 미화, 운전직으로 현장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채용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장애예술인을 구분하여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 고용현황>

연도별	기관명	취업자수(명)	취업분야
2018년	세종문화회관	3	·무대음향 1명 ·미화분야 1명 ·운전기사 1명
2019년	디자인재단	1	·행정분야 1명
2020년	디자인재단	2	·일반, 디자인 행정 2명
2020년	세종문화회관	3	·미화분야 3명

-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3.4%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서울시 산하 공공기

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8곳,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2 억원을 상회하는 등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대한 지적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sup>1)</sup>가 있듯이 동 조례에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8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임.
- 최근 3년, 4개의 기관에서 총 21개 시설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표와 같음.

#### <최근 3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중 문화시설 개선 현황>

기관명	개선 내용
서울문화재단	·2020년 서울문화재단 본관 및 창작스튜디오 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3기 설치 ·2021년 잠실창작스튜디오 확장에 따른 필요시설 및 장애편의사항 연구용역 실시
디자인재단	·2020년 경사로, 장애인 리프트, 휠체어 슬로프, 핸드레일, 점자블록 설치
세종문화회관	·2018년 장애인용 도움벨 설치, 장애인 시설 안내문구 표기, 출입문 동선 폭 확보, 문턱 보조판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2019년 자동문 교체, 경사로 개선, 매표소 카운터 높이 개선, 장애인화장실 위치 변경, 장애인 무대 접근성 개선,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3대 구매설치 ·2020년 경사로 설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개선, 자동문 설치,
서울시설공단	·2019년 무장애통합정원 조성, 배리어프리 동물원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음수대 설치,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2020년 점자가이드맵 제작 및 배포, 오감 체험시설 설치 등

1) 김재중, <‘노동특별시 맞나?’ 서울시 산하기관 3곳 중 한 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국민일보》, 2021.2.15.

- 한편, 문화본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디자인정책과-9767, 2020.8.28.)에 따르면 ①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모든 건축물 등의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전(全)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를 개정 중이며, ② 사업 기획 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대표 모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공정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③ 법적 최소 기준(Barrier-Free)이 아닌, 다양한 이용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행태와 특성을 고려한 공간, 건축물 등에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유니버설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및 동 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사업자<sup>3)</sup>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문화·예술활동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문화·예술사업자의 경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우 그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개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시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가 소규모 문화시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항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라. 종합 의견

- 현행 조례는 장애인을 특정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고자 2017년 1월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책추진의 추동력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문화활동 및 문화향유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집행부는 땀질식,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하여 장애예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위기상황에서도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술생태계 자체의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긴 안목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2131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소영 의원	2021. 2.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 조례제정안 주요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12.10.시행)되어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안됨.</li> </ul> <p>○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li> <li>-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li> <li>-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5조)</li> <li>- 장애예술인 고용 촉진 등에 대해 규정(안 제7조)</li> <li>-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 및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8조)</li> <li>-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9조)</li> <li>-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안 제10조)</li> </ul>				
추진경과	○ 2021. 2. 3. 조례안 발의(김소영 의원 대표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홍우석(☎2133-2552)	담당	양송희(☎2133-255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제7호 중 “국민”을 “시민”으로 수정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31
----------	------------

2021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제7호 중 “국민”을 “시민”으로 수정함.

### 2. 수정 주요골자

- 상위 법령 근거를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국민”을 “시민”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7호).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6.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9.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